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녀 성과 본의 결정방식 변경 〉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3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방식 변경	3
2. 관계기관 의견	10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Ⅲ. 검토의견

1.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방식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 시기를 출생신고시로 하고,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부모의 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지정하되, 동일 부모의 자녀는 동일한 성과 본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81조).

현 행	개 정 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정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② 자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부 또는 모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결정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④ ~ ⑥ (생략) <u><신설></u>	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 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자의 성과 본을 정한다. ⑦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와 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성과 본은 같게 정하여야 한다.

나.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

현행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제1항 본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i)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제1항 단서), ii) 부가 외국인인 경우(제2항), iii)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제3항)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는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제5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항).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 시기를 출생신고 시로 하고,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부모의 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지정하되, 동일 부모의 자녀는 동일한 성과 본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에 대한 부성(父姓) 우선주의의 원칙을 부모협회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가족관계를 정립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해 부모의 성 중 하나로 정해지나, 협의가 없는 경우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협의우선 부성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다만,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모의 성을 알파벳 순으로 병기), 일본의 경우도 자의 성은 부모가 혼인시 정한 성을 따르도록¹⁾ 하고 있어 자의 성과 본의 결정에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음²⁾.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방식에 대하여는 개인의 기본권, 성평등, 가족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1) 일본의 경우 부부는 혼인 시 부 또는 처의 성을 혼인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일본 「민법」 제750조) 자의 성이 혼인성에 연동되는 방식임.

2) 소은영, “민법상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6. 3.

현행 「민법」 규정이 마련된 입법적 연혁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와 같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입법적 연혁을 살펴보면,

제정 민법은 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를 알 수 없는 자 및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만 예외규정을 두어³⁾, 부성주의와 성 불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다가,

이후 2005. 3. 31. 법률 제7427호 개정(2008. 1. 1. 시행)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엄격한 부성주의원칙을 완화하여 현행 「민법」 제781조와 같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음.

한편, 동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존재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과

3) 2005. 3. 31. 개정 전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관련하여,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해당 결정은 개정 전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 개정(2005. 3. 31. 법률 제7427호)을 통해 입법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

다만,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성우선주의 원칙 및 예외적 부모 협의 방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개정을 통해 부성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협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⁴⁾이 제시되고 있고,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제도 개선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⁵⁾,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계속 중임⁶⁾.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방식 변경에 대하여는 제도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변화된 사회·문화 제도의 반영,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 측면 등과 더불어 「민법」의 제·개정 연혁, 가족 및 친족 제도의 법적 안정성,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개정 민법 시행 이후 20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도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는 0.2%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 개정을 통해 성·본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 미혼모 자녀, 비혼 출생,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자녀에 대한 동등한 양육권과 권리를 성별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양성평등 및 자기결정권을 보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음(소은영, “민법상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6. 3.)

5)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6) 2021헌마262 민법 제781조제1항 위헌확인(심리 중)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모성(母姓)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용이성을 강화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을 도모하려 함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녀의 성 결정 방법은 양성평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전통, 사회 일반의 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성·본 결정 방식을 변경할지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자의 성과 본 결정 방법 관련 해외 입법례

국가	원칙	원칙 외 결정 방식
독일	◦ 혼인성(姓)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혼인성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성을 협의로 정함 ※ 독일에서는 혼인당사자들은 혼인성(姓)을 정할 수 있으나, 혼인성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 성 계속 사용	◦ 부모가 자(子)의 성(姓)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 <u>가정법원</u>이 정함
프랑스	◦ 부모의 협의에 의해 부모의 성 중 하나로 정해지나, ◦ <u>협이가 없는 경우 부의 성을 따름</u> → <u>협의우선 부성주의원칙</u>	◦ 다만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한 <u>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u>에는 부의 성과 모의 성을 <u>알파벳 순 병기</u>
일본	◦ 자의 성은 부모가 혼인 시 정한 성을 따름 ※ 일본에서 부부는 혼인 시 부 또는 처의 성을 혼인성으로 정함 (일본 민법 제750조) → 자의 성이 혼인성에 연동되는 방식	-
미국 뉴욕	◦ 부모의 성이 같은 경우 그 성을 따르며, ◦ 부모의 성이 다른 경우 <u>부의 성을 우선</u>으로 따름	◦ 부모의 <u>협의</u>로 모의 성이나 부모의 성 병기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 부모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나, ◦ 협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의 성에 따름 → <u>협의우선 부성주의원칙</u>	◦ 부모의 <u>협의</u>로 부모의 성 병기 가능
러시아, 대만 등	◦ 부모의 <u>협의를 우선</u>으로 하나, 협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u>법원 등</u>이 자녀의 성을 결정함	◦ 각국 협의 불성립시, - 러시아 → <u>후견 및 보좌기관</u>이 자의 성을 결정 - 대만 → <u>호적사무소</u>가 <u>추첨</u>을 통해 자의 성을 결정 - 몽골 → <u>법원</u>이 결정